

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(ESS) 시스템

이온어스(주)

1. 규제특례 내용

- 명칭 :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(ESS) 시스템
- 내용 : 전기차 배터리를 모듈화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작하고, 이를 탑재한 트럭의 판매 및 대여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- 구역 :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일대
- 기간 : 2021.7.~2025.07
- 규모 : 총 10대 이내의 제품 판매 및 대여
*판매는 실증조건에 대해 SKT(구매처)와 협의 시에만 판매 가능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- (산업부) ①이동형 ESS 설치운용기준(사전안전성 확인 등)을 통한 안전성 검증
②소유자 책임하에 사전안전성 확인,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신청·후속조치, 상시안전관리 등 제반사항 이행
③ESS 충전과 사용의 종별이 일치되도록 관리하는 방안 마련, 안전 및 ESS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만 충전·제공 등
- (국표원) ESS 배터리의 안전기준(KC 62619) 시험항목 통과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·영업배상 책임보험(1인당 1.8억원, 대물 사고당 10억원)
-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이온어스에서 전액 배상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